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2타경6160 부동산강제경매 2022타경74347(중복) 2023타경8781(중복) 2023타경60710(중복)			매각 물건번호	2	작성 일자	2026. 3. 9.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이상민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목록 2 및 5 : 각 2020.02.12.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3. 3. 13.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입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박선영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20.03.30.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19.12.30.~	300,000,000		2020.03.30.	2023.11.10.	2024.1.22.	
<비고>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없음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없음										
비고란										
1. 일괄매각, 목록 5.는 지분매각임.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한 피해자 박선영이 우선매수신고서(2026. 2. 22. 자)를 제출하였고, 이를 허가함. 단,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동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실효되는 경우 우선매수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그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2타경6160

[물건 2] 2.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88-2 디동호 문발동칸하우스1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유채꽃길 58
위 지상
디동호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84.112㎡
2층 84.112㎡
(제시외 건물 옥탑1층 58.012㎡)

5.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88-2
대 337.7㎡

매각지분 갑구3번) 2분의 1 주식회사 칸하우스 지분 전부

감정평가액		807,417,528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5.11.25	807,417,528	80,741,800
2회	2025.12.30	565,192,000	56,519,200
3회	2026.02.10	395,634,000	39,563,400
4회	2026.03.24	276,944,000	27,694,400

- 일괄매각, 목록 5.는 지분매각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한 피해자 박선영이 우선매수신고서(2026. 2. 22.자)를 제출하였고, 이를 허가함. 단,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동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실효되는 경우 우선매수신고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그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로서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